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 차별 사건 관련 자료

1. 이봉재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명]
 -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4. [관련 결정문]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원임용 차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진 정 서

진 정 인 이봉재 [REDACTED], 변호사

[REDACTED]
전화 [REDACTED] 이메일 [REDACTED]

(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1동 1391 서림빌딩 8층 금강합동법률
사무소, 전화 042-472-4900, 팩스 042-472-4904)

피진정인 대법원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으므로 이에 진정합니다.

1. 진정인은 1996. 11.경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로 구속되어 1997. 3.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8. 5.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가 1999년경 사면된 사람입니다.
2. 그 후 진정인은 2001. 12.경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3기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수료를 받다가 2003. 12. 16.경 대법원에 예비관사임용신청을 하였고 2004.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나 대법원의 2004. 2. 18. 자 법관인사에서 예비관사임용을 거부당하였습니다.
3. 임용 거부 사유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별첨 「예비관사 임용 관련 통보」 사본에서와 같이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근거로 진정인의 전과 또는 그로부터 추지된 진정인의 사상이 임용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진정인의 연수원 수료 성적은 제33기 연수원 수료자 976명 중 73 등으로서 예비판사 임용권인 192등 내에 드는 성적입니다. 임용권 내의 임용신청자는 진정인과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나. 임용심사를 위해 2004. 1. 14. 실시된 진정인에 대한 면접에서 면접관 3인(법원행정처장, 정덕애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학장,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0여분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사실에 관하여만 집중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진정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으로 보이는 자료를 읽으면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였나요?

(예)

-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망년회는 합니다)

-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국가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이적단체인지 여부는 기록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 당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어도 개정은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자신이 판사로서 자신의 사건을 재판한다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유죄판결을 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게 되면 과거 전력 때문에 더 과하거나 덜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요?

(판례를 참고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은 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인을 임용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별첨 「2000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참조)

4. 결국 대법원은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진정인을 예비
관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진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면접 과정 자체에서 진정인의 사상을 추차하려고 함
으로써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 추척하여

5. 진정인은 이전에 위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2004. 3. 8.

진정인

**[성명]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자 인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면 받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이봉재 씨에 대하여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전과를 이유로 임용을 거부했다면 이는 임용신청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전에도 국가보안법위반자 중에 기소유예자 4명, 집행유예 선고자 1명 등 5명을 임용한 사례가 있는 점, 법원 외부인사가 절반 참여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봉재 씨의 연수원 수료 성적은 연수원 수료자 976명 중 73등으로서 예비판사 임용권인 192등 내에 드는 성적이며 그 이외의 임용신청자는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임용된 점, 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자 1인이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8명) 임용이 거부된 점, 대법원이 최근 9년간 판사(예비판사 포함)임용 신청을 거부한 17명 중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 경력자가 12명인 점, 임용심사를 위해 실시된 이봉재 씨에 대한 면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사실에 대하여만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봉재 씨의 임용탈락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임이 드러난다. 또한 외부인사가 참여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따랐다고는 하나 임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난 대법관 제청 파동에 따른 여론에 밀려 대법원이 인사제도를 개선한 후 발생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수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에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이봉재 씨에 대한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4-02-27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1999년 사면된 전력자이다.
2.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과사실이 부적격 판정의 주된 이유였기는 하지만, 전과의 배경, 이적표현물 제작 등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나 이미 사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적 평가로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대법원은 "중전에도 국보법 위반자 중에 기소유예자 4명, 집행유예 선고자 1명 등 5명을 임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국정감사 자료(2000년 송영길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법관 임용 신청자 가운데 임용이 거부된 사람은 총 17명이었고, 이 가운데 시국사건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9명이었다. 이는 시국사건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판사로 임용되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법관 임용불가'라는 딱지가 붙여진 채 아주 특수한 일부 경우에만 딱지를 떼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도 이번 임용불가 결정은 법원이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변화와 시대적 정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사상은 나날이 더욱 폭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틀에 매몰돼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5. 특히, 대법원은 이번 임용거부 건이 외부인사 4명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따른 결과라며 심사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부인사 구성의 적정성과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한 사상검증 차원의 심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시도는 좋았으며 결과로 인해 각계의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충분히 감안, 다음에 구성될 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적정성 시비나 특정 전력자에 대한 잘라내기식 심사라는 비난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